

의안번호	2216299
의 퇴 인	이재관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.
추계번호	26A0413
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(시판품조사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(이하 “시판품조사”라 한다)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(이하 “현장조사”라 한다)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- 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- 2.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- 3.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- 4. 그 밖에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0조(시판품조사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사유가 추가되면 조사 관련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이때 시판품조사는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말하며, 현장조사는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

하는 것을 말함

- 개정안의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추가 사유는 “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”, “그 밖에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임
-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수요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산업통상부의 시판품조사 관련 현행 사업(“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”)의 2026년도 예산은 9억 8,000만원(총 조사대상 680건) 규모이며, 최근 조사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실적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품목 수	65개	64개	64개	71개	72개
조사건 수	661건	635건	633건	630건	636건
예산	7.1억원	9.9억원	9.8억원	9.8억원	9.8억원

자료: 산업통상부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